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보조)

사업목적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하기 위함

신청기간

2022. 1. 20.(목) ~ 별도 공고일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지급금액

공단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기지원금이 있는 경우 잔여 한도 내에서 지급)

지급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제외)
2.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해당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3. 태양광패널 설치·작업 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고소작업대 임차료 지원)
4.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엘리베이터 승강용 브래킷 지원)



지급품목

사업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시설 및 장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2)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 (3)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공급 및 취출) (4)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5) 끼임방지시설(동력전달부 방호덮개, 울 등) (6) 크레인안전장치 (7) 천장크레인(3톤미만,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 교체) (8) 산업용로봇 방호장치 (9)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 (10) 지게차 안전장치 (전·후방 카메라,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추락방지 시설(계단, 사다리, 안전난간 등) (12)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13) 고소작업대 (14)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장치 (15)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환기팬, 복합가스측정기, 용접불연포 등) (16) 소음방지시설 (17) 국소배기장치(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18)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 (19) 사회적이슈품목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
|--|--|

※ 단, 당해연도 융자금,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중복신청 불가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목적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신청기간

2022. 1. 3.(월) ~ 별도 공고일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지원금액

사업장당 10억 한도, 연리 1.5%(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제외 대상

1. 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2.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3.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사업주 자부담금 융자지원 가능



지원품목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및 방호장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재예방 시설 및 장비 등

구분	지원대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기구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 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기타 근원적 개선을 위한 대체·자동화설비	국소배기장치(작업환경측정 대상), 자동차 도장부스 지게차(3ton 미만 전동식) 등

※ 결정일 이전 계약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제외, 신규설비에 한함

※ 융자결정금액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의 경우, 수입어음결제액은 전액 선지급 가능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보조), 용자지원관련」 자주하는 질문(Q&A)

공통

- Q. 보조·용자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설비 투자완료 후 공단 지급 및 대여 일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단, 보조금의 경우 실 소요금액 납입 후 추후 사업장에 공단판단금액 지급)
- Q. 1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Q. 양산품이 아닌 공사품도 구매가능한가요?
 A. 공사품의 경우도 신청가능하나, 사업별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전문기관이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자

- Q. 양식 중 대출거래예정확인서는 언제 제출하는건가요?
 A. 신청서 제출 전 은행에 방문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은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방식으로서 은행에서 사업주의 신용 및 보증방범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 Q. 안전인증 심사 중인 제품을 신청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자자금 결정 시 조건부 결정으로서, 투자완료확인서 제출시 안전인증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불합격인 경우 지원결정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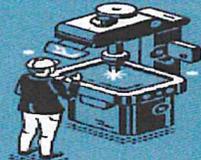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보조)

- Q. 지원한도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10년 전 지원받은 보조금의 경우 초기화 됩니다. 또한,
 1. 고용증가 사업장,
 2.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3.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
 4. 사고사망만인을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 사업장의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 ①화학비료제조업 ②기타화학제품제조업 ③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④석재및석공품제조업 ⑤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⑥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⑦강선건조또는수리업

※ 안전투자 혁신사업 관련 Q&A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참조



접수 및 문의방법



신청방법 신청서양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참고

구분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보조)*	clean.kosha.or.kr
	안전투자혁신사업	anto.kosha.or.kr
오프라인 (인편, 우편)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	kosha.or.kr (부산광역시본부 알림마당 신청서 양식 참고)

*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

문의처 우편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 6층 경영총괄부, 사업 담당자 앞

접수처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사업
경영총괄부	박세영 과장(051-520-0516)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황송란 대리(051-520-0504)	용자

참고사항



문의사항 또는 사고사망 예방에 효과적인 끼임, 추락관련 품목을 제안하고 싶으신 경우 연락바랍니다.

